

임예진 관세법(2024년 대비) 개정사항 (2)

- 관세법 시행령 2024. 2. 29. 개정 [시행 2024. 2. 29.]

* 공지사항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4년 2월 29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 중에서 2024년 7월 1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관세법 법률과 함께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이 있으므로 개정특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14 : 영 제1조의3 제5항 ④ 신설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②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③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④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23, 24 : 법 제12조 및 영 제3조 전체 수정

법 제 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1항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12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보관기간 [영 제3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부터 5년
 - ㉠ 수입신고필증
 -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부터 3년
 - ㉠ 수출신고필증
 - ㉡ 반송신고필증
 - ㉢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부터 2년
 -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제2항 작성 및 보존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2항 관련 시행령

보존기준 [영 제3조 제2항]

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 ①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 ②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③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3항 전자화문서 효력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 [영 제3조 제3항]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①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 ②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 ③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④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p.61 : 영 제17조 전체 수정

영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①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②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⑥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p.149, 150 : 영 제61조 제4항, 제8항 수정

제4항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8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p.156~158 : 영 제65조 전체 수정

제1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제2항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영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영 제60조 제1항 ③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 ② 조사대상공급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제3항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영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항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유예

제3항 ②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제5항 신규공급자에 대한 적용시기

제3항 ②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6항 신규공급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항 ②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수출증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7항 기준수입가격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영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p.165 : 영 제67조 제2항, 제3항 수정

제2항 담보가 제공된 경우

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3항 본조사 결과 후 약속이 수락된 경우

영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p.166~168 : 영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수정

제1항 재심사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②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제2항 재심사 요청시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제4항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정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항 재심사기간 중의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항 약속의 수정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177, 178 : 영 제75조 제4항, 제8항 수정

제4항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8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p.183~185 : 영 제79조 전체 수정

제1항 상계관세 부과방법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영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 ② 조사대상수출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제2항 조사대상 미선정 수출자 및 신규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방법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 ①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삭제

제4항 신규수출자에 대한 부과유예

제2항 ②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제5항 신규수출자에 대한 적용시기

제2항 ②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6항 신규수출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항 ②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 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p.188 : 영 제81조 제1항 수정

제1항 수출자의 서면제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p.191 : 영 제83조 제2항, 제3항 수정

제2항 담보가 제공된 경우

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3항 본조사 결과 후 약속이 수락된 경우

영 제81조(보조금 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p.193~195 : 영 제8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수정

제1항 재심사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② 상계조치의 종료로 국내산업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제2항 재심사 요청시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제4항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항 재심사기간 중의 상계관세 조치의 효력

법 제6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항 약속의 수정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207 : 영 제90조 제4항 ①~④를 다음의 표로 수정

제4항 가격기준에 의한 부과

제1항 ②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text{하락률} - 1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30\text{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9\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4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50\text{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19\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6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70\text{퍼센트}]$
75퍼센트 초과	$\text{기준가격} \times [29.5\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75\text{퍼센트포인트}) \times 90\text{퍼센트}]$

p.217, 218 : 영 제95조 제2항 수정, 제4항 삭제

제2항 대상물품

편의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제4항 삭제

p.226 : 영 제97조 전체 수정

영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제1항 적용신청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자의 적용신청

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항 세부사항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227, 228 : 영 제98조 전체 수정

영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제1항 품목분류표의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2항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사유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 ③ 그 밖에 ① 및 ②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법 제84조 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제4항 품목분류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항 품목분류 수정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①의 사유로 법 제84조 ① 및 ②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p.234 : 영 제106조 제7항 수정

법 제86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재심사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 [영 제106조 제7항]

법 제8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관세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영 제106조 제4항 ②부터 ⑦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p.237 : 영 제106조 제8항 ② 수정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237 : 영 제107조 수정

법 제87조 제1항 관련 시행령

품목분류의 변경 [영 제107조]

제1항. 품목분류 변경사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삭제>
- ②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삭제>
- ③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 ④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⑤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제2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p.334, 335 : 법 제116조의2, 영 제141조의5 전체 수정

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항 명단 공개 대상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70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6조의2 제1항 ① 관련 시행령

명단 공개 제외대상 [영 제141조의5 제1항]

법 제116조의2 제1항 ① 단서에서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text{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B}$$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액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③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6조의2 제1항 ② 관련 시행령

명단 공개 제외대상 [영 제141조의5 제2항]

법 제116조의2 제1항 ②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항 관세정보위원회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법 제116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항 소명기회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116조의2 제3항 관련 시행령

통지시 안내사항 [영 제141조의5 제3항]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추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제4항 재심의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제5항 명단 공개 방법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6조의2 제5항 관련 시행령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 [영 제141조의5 제4항]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관세포탈범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 [영 제141조의5 제5항]

법 제116조의2 제1항 ②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공개 기간 [영 제141조의5 제6항]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 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① 법 제116조의2 제1항 ②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 ② 법 제116조의2 제1항 ②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계속 공개하는 경우의 공개 기간 [영 제141조의5 제7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 ①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 ②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6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340 : 영 제141조의11 제1항 ④ 수정

④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p.573 : 영 제244조 수정

법 제237조 제1항 관련 시행령

통관의 보류 [영 제244조]

법 제237조 제1항 ⑦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②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595 : 영 제251조의2 전체 수정

법 제246조의2 제1항 관련 시행령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영 제251조의2]

제1항. 손실보상 대상

법 제246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검사 대상 물품
- ② ①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제2항. 손실보상 금액

법 제246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①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제1항 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 ②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①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p.635: 법 제264조의11 및 영 제263조의3 신설

법 제264조의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1항 마약류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법 제246조의11 제1항 관련 시행령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영 제263조의3]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 ②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③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 ④ 검찰총장: 다음의 정보
 -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제2항 협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준용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준용한다.